

가계대출상품설명서

신한저축은행 귀중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
- ◆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 -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, 대표적으로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주택담보대출, 주식매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.
 - 신용대출은 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개인 신용도에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.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,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◆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 - Q1. 대출한도를 조회했는데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?
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다만, 대출상품 이용 시,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- Q2.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?
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여신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,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- Q3.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<예시> 대출금 1천만원을 중도상환 할 경우, 최대 20만원 부과
 - Q4. 대출이용 및 청약철회 시 고객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?
대출을 이용하실 경우,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대출금액 및 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 대출의 청약철회 시 대출금과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모든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◆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 - ※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예시> 대출원금 1천만원 1개월이상 연체 시(예: 연체이자율 10%적용)에는 월 연체이자 83,333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이자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5.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 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savings.com) 또는 고객센터(1644-77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(주)신한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상위 대출거래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(듣고 이해)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채무자(본인) [] (서명/인) 연대보증인/제3자 담보제공자 [] (서명/인)

1. 상품 개요 및 특성

상 품 명		대 출 기 간	취급 후 ()개월 중 거치기간 ()개월
대출신청금액	원	채 권 보 전	<input type="checkbox"/> 담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(무보증,보증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적용예정금리	%	[금리적용방식: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(조달기준금리 + ()%)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] (연체가산이자율 최대 3%) 최고연체이자율 ()%	
상 환 방 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금분할 <input type="checkbox"/> 원리금분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중도상환수수료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대상 아님	금리인하요구권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
연계·제휴서비스 제공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있음		

2. 수수료 등 비용부담

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**고객님께서 원리금(대출원금+이자) 상환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아래의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.**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,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◆ 고객님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, 좌측 체크박스(☑)에 표시됩니다.

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도상환수수료 :	중도상환대출금액 x <input type="text"/> % x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☞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까지 적용합니다.	
※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 하는 금액입니다.	
• 다만,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저축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 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.	
<예시> 대출금 1천만원, 대출기간 12개월, 중도상환수수료 2% 로 취급하고, 6개월 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101,369원 입니다.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대출금 10,000,000원 x 중도상환수수료 2% x [(대출기간 365일 - 경과일수 180일) ÷ 대출기간 365일] </div>	

<input type="checkbox"/> 인지세 (고객부담금) :	<input type="text"/> 원		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			
대출금액	인지세액	고객부담 (50%)	저축은행 부담(50%)
5천만원 이하		비과세	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	35,000원	35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	75,000원	75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	175,000원	175,000원

<input type="checkbox"/>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	
구 분	부담하게 되는 금액
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/말소	• 부동산 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 <예시> 토지 2필지: 2건 ※ 소재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	• 1건 : 30,000원 • 2건 이상 : 1건당 10,000원 추가
확인서면(등기필증 없는 경우)	• 법무사 보수료 30,000원
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	•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저당권 설정일 기준) <예시> '21.7.30 기준 1억원 설정 시 43,750원 부담 ※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□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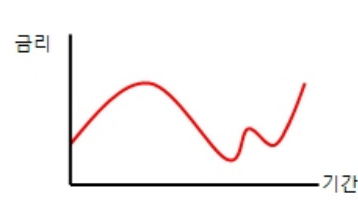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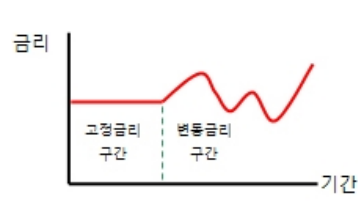
구분	부담하게 되는 금액
신규 근저당권 설정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면허세 + 지방교육세 + 등기신청 법무사 수수료 <예시> 대출금액 2억원(채권최고액 2.4억원) 기준 등록세 48만원 + 교육세 9.6만원 + 등기신청수수료 1.5만원 + 법무사수수료 32만원 = 91.1만원
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<예시> 일반지역 15,000원, 원거리지역 22,000원
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<예시>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원 기준, 약 94만원(수수료 88.4만원 + 실비 5.6만원)

□ 기타 수수료 /비용 : 항목 _____ 금액 _____ 원, %

- ◆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◆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◆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, 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.

3. 대출이자율

- ◆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,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의 신청하신 상품은 [**_____ 금리**] 방식의 상품입니다.

	고정금리	변동금리	혼합금리
운용형태			
특징	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유지	일정주기(3/6/12개월 등)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	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
장점	시장금리 상승기 에 금리 인상이 없음	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	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 계획 에 맞춰 운용 가능
단점	시장금리 하락기 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※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	

◆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**원가요소**와 **목표이익률(마진)**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**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**으로 표시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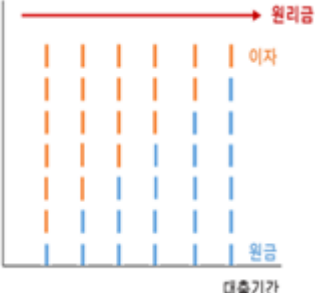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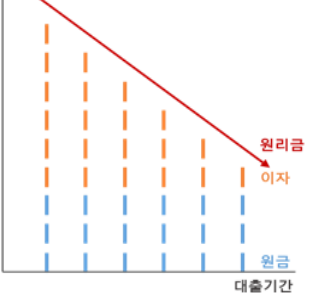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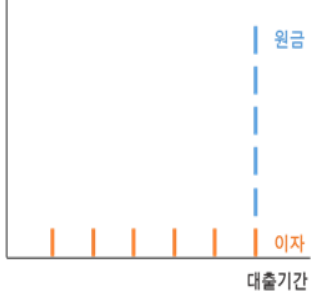
대출 기준금리	가 산 금 리			최종금리
	리스크 프리미엄	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요소 (신용원가, 업무원가, 법적비용)	목표이익률 (+)(-)가감조정 전결금리	

- **대출 기준금리**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, 저축은행은 COFIX, 금융채,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**가산금리**는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.
 - **리스크 프리미엄** : 저축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- **원가요소** : 고객의 신용도·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·전산처리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 - **목표이익률** :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- **가감조정 전결금리** : 부수거래(급여통장 개설·카드실적·수신실적 등) 감면금리, 전결 조정금리 등

- **결정된 대출금리**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**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대출 상환방법

◆ 상환방법별 특징

원리금균등상환	원금균등상환	만기일시상환
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월 총 상환금액이 동일하며,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. -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<u>즉시 분할 상환</u>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<u>거치식 분할상환</u>방식이 있습니다.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 - <u>약정한 금액으로 매월 원금 상환</u> 시 만기일자에 <u>잔여 대출원금은 전액상환</u>해야 합니다.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약정기간 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◆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
-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◆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

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예시> 대출금액 1 천만원 / 대출기간 5 년 / 금리 연 10%

•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
대출기간	상환원금	이자	상환원리금	대출잔액
1 년	1,623,012 원	926,628 원	2,549,640 원	8,376,988 원
2 년	1,792,964 원	756,676 원	2,549,640 원	6,584,024 원
3 년	1,980,081 원	569,559 원	2,549,640 원	4,603,943 원
4 년	2,188,459 원	361,181 원	2,549,640 원	2,415,484 원
5 년	2,415,484 원	132,432 원	2,547,916 원	0 원
합 계	10,000,000 원	2,746,476 원	12,746,476 원	-

• 원금균등상환 방식

대출기간	상환원금	이자	상환원리금	대출잔액
1 년	1,999,992 원	908,076 원	2,908,068 원	8,000,008 원
2 년	1,999,992 원	708,078 원	2,708,070 원	6,000,016 원
3 년	1,999,992 원	508,602 원	2,508,594 원	4,000,024 원
4 년	1,999,992 원	307,752 원	2,307,744 원	2,000,032 원
5 년	2,000,032 원	108,080 원	2,108,112 원	0 원
합 계	10,000,000 원	2,540,588 원	12,540,588 원	-

• 만기일시상환 방식

대출기간	상환원금	매년 이자	이자합계	상환원리금	대출잔액
1~4 년	0 원	999,993 원	3,999,974 원	3,999,974 원	10,000,000 원
5 년	10,000,000 원		999,993 원	10,999,993 원	0 원
합계	10,000,000 원		4,999,967 원	14,999,967 원	-

◆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부담

- 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**상환 부담이 증가**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상환부담 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**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
5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◆ 연체이자율은 [약정금리 +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
연체가산이자율은 **최대 연 3%**이며,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,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◆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1.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료가 가산되고, **1 개월이 경과하면**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2.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3.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분할상환금(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분할상환원리금) 대한 연체이자를, **2 회 이상** 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회) **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
4.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
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5. 종합통장대출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

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 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,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※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됨**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◆ 대출 원리금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는 **단기연체**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제한 (신용카드 정지 등) 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◆ 대출 원리금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 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◆ **장기연체정보**가 등록된 후 **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**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**해제 기록이 최대 1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**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(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)

- ◆ **기한의 이익**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하며, 저축은행과의 대출 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.
- ◆ **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**,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**즉시 상환 및 연체이자 부담**하여야 하며, 일정 기간 경과 후 **신용도 판단정보 등록** 등이 발생합니다.
- ◆ 채무자인 고객 소유의 예금, 담보부동산에 **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(가)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(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7 조제 1 항,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)**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셔야 합니다.
- ◆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셔야 합니다.

7.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◆ 일반금융소비자는 **대출계약일 익일부터 14 일 이내(달력상 일수,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)**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◆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**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대출 앱, 우편 또는 이메일(반드시 신청서 발송사실을 대출 취급 영업점에 고지), 영업점방문으로 저축은행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**대출금**과 이에 대한 **이자**, 대출과 관련하여 **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**하여야 합니다.
- ◆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◆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 개월 내에 2 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나. 위법계약해지권

- ◆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, 수수료 등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 17 조제 3 항 위반)
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(법 제 18 조제 2 항 위반)
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 19 조제 1 항·제 3 항 위반)
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 20 조제 1 항 위반)
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 21 조 위반)
- ◆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 (영업점 방문접수, 홈페이지 민원신청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다. 금리인하요구권

- ◆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**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** 판단되는 경우(직장의변동, 연소득증가,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**금리인하를 요구**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 14 조 2)를 말합니다.
- ◆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모바일대출앱, 홈페이지 등)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◆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**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- ◆ 저축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◆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 조에 따른 **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** 저축은행에 **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** 이 경우, **열람요구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**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**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◆ 저축은행은 **요구받은 날부터 8 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**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

8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◆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◆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**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감액**될 수 있습니다.
 -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9.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

◆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**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**
- **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**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(또는 형태)의 대출은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보다 **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**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**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-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은 휴일에도 인터넷·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신한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이자납입방법

- 고객님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/매분기/매년)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◆ 저축은행·채무자로부터의 상계

- 상계란 채무자와 저축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,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- 저축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,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,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, 지체 없이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☞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(중도상환수수료 등)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◆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

-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,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변경 신청 전) **비용, 이자, 원금** 순서로 상환 → (변경 신청 후) **비용, 원금, 이자** 순서로 상환

- ※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(이자 및 원금)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,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◆ 채무조정 지원

-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, 채무조정 방법(원리금 상환유예, 만기연장 등)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.
- ※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, 절차, 효력 등은 저축은행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0. 계약체결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1.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예 / 아니오
2.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**3년 이내의 기간 동안**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**중도상환수수료**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예 / 아니오
3. 대출원리금 연체 시 **대출원금**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**됩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예 / 아니오
4.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**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**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**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예 / 아니오
5. 대출 청약철회 시 **고객님께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**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셨습니까? 예 / 아니오
6.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? 다만, 신용정보법(연체·부도·개인회생 등)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않습니다. 신청 / 신청하지 않음
7.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**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**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셨습니까? 예 / 아니오
8. 본인은 신한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·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,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,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한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. 설명을 받았음 설명 받지 않았음 해당사항없음

※ 계약체결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(주)신한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위의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**주요내용, 고객부담비용** 및 금융소비자의 **권리**에 대하여 **충분히 설명을 (듣고 이해)**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채무자(본인) (서명/인) 연대보증인/제3자 담보제공자 (서명/인)

◆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,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
상담지점명		담당직원명	
상 담 일		연 락 처	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644-7777) 또는 홈페이지 (www.shinhansavings.com)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개별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 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(또는 정해진 기간에 분할하여 실행하는 방식)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
한도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강제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
담보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
근저당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 •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
근질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: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•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
양도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•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
담보신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 •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
대위변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자의 채무를 제 3 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 3 자(대위변제자)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(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취득합니다.
채무인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(구채무자)로부터 제 3 자(신채무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 •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 3 자(매수인)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 대출도 제 3 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.
기한의 이익 (상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 •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. • 다만,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(저축은행)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.
신용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식별정보(성명,주민번호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 등),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, 신용능력정보(채무정보 등), 공공정보(체납정보 등)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
신용평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신용평가회사(CB 사)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 점부터 1000 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. •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.

용 어	설 명
담보인정비율 (LTV, Loan-To-Valu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•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
총부채상환비율 (DTI, Debt-To-Incom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,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•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등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
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(DSR,Debt-Service-Ratio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•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.
전세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·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